

#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(안)

(제 정) 2016. 4. 1.  
(일부개정) 2019. 1. 23.

## 1. 목 적

화양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“보장협의체”라 한다)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하여 주민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.

## 2. 명 칭

명칭은 “광진구 화양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”로 한다.

## 3. 구성 및 기능

- (1) 보장협의체 구성은 20인 내외로 하며, 당연직 위원(동장)과 협의회 위원 중 1인 을 호선하여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- (2) 보장협의체는 회장, 부회장, 총무를 포함 실무 운영위원 5-7명을 구성하며, 운영 위원들은 안전 및 사업의 사전심의를 담당한다.
- (3) 보장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① 동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  - ②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·실천적 의지가 있거나, 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·개인
  - ③ 지역 내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한 영업주 및 관련 직업을 가진 자
- (4) 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
  -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인적·물적 복지자원 발굴
  - ②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및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·지원
  - ③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한 공동 지역특수사업에 대한 논의 및 추진방안 모색

## 4. 비밀 준수

보장협의체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## 5.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

- (1)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(2) 일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## 6. 위원 위·해촉

위원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, 품위 손상,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## 7. 회의 및 의사

- (1) 위원장은 해당 보장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재적위원 1/3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(2) 정례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한다.
- (3) 지역복지 공동사업 추진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,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(4) 사례관리는 즉시성을 요하는 사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.
- (5) 보장협의회 복지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(동 사회복지담당)를 둔다.

## 8. 회의록 작성

- (1) 보장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①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  - ② 회의 참석자 명단
  - ③ 협의사항 및 결과
  - ④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(2) 보장협의회 위원장은 회의에서 논의·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다음 회의 때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.

## 9. 예산 관련

- (1) 보장협의회는 보장협의회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·관리한다.
- (2) 보장협의회는 보장협의회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.

## <부 칙>

보장협의회 위원 연회비는 12만원으로 한다. (2019. 1. 23.)